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등록사항 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공개 근거 마련〉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5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민회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8.
3. 회부연월일 : 2025. 4.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도록 함.

그런데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 관련 부정행위

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7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1)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① 재산등록사항 심사 결과 내린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조치와 동 조치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 등에 통보한 경우 해당 통보 내용, ②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하여 공개대상자등의 심사청구 기한 내 미 실시 등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내린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조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8조의2제7항 신설, 안 제14조의5제11항),

2) 등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은 경우 동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1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 ⑥ (생략) <u><신설></u>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하여 공</u>

2. 검토의견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치를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1)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와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 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③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또한,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대상자등(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를 통지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²⁾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⑤ (생략)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

개정안은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내린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조치 사항과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통보의 내용,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관련된 각종 의무위반 행위와 위법·부정한 재산증식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사항,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심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산등록 제도 및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른 공개 제도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첩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입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런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제도상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위반 행위가 있거나 심사 결과 비위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관계 기관에 대한 혐의 사실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재산등록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적 성격의 각종 조치에 관하여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개정안은 이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더하여 해당 조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제재적 성격의 공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재산등록 등과 관련하여 의무위반 행위 등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등 현행법에 따른 제재적 조치가 내려진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첩적으로 위반 사실 등의 공표라는 제재를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개인의 명예나 신용 등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제재적 성격의 공표는 가급적 최소한의 범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³⁾

3)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상 사후적인 제재적 조치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동법이 공직자의 직무의 수행과 관련한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 방지를 통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종 규제적 제도를 도입하되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등록, 신고, 재산의 매각 및 신탁, 심사 청구, 신청 등 사전적·자율적 방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봄.

따라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재산증식 사례의 발생 추이 등 문제점을 명확하게 하고⁴⁾ 개정안에 따른 공개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적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수단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경우 등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적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은 등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은 경우 동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4)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4조의4제1항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등으로 하여금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⁵⁾ 제14조의14제1항은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

5)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②~⑥ (생략)

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개정안은 등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개대상자등이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실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으면 해당 시점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은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등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개의 시점에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 개정안에 따른 유의미한 입법적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셋째,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제재적 성격의 공표라는 불이익 조치의 대상으로서 적정한지의 관점에서 비례의 원칙상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고 및 시정조치는 재산등록이나 직무관련성 심

6)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상 보정 조치로 징계별과 같은 과벌적 처분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나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통보는 비위의 혐의가 인정되는 단계로서 징계별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상 과도한 불이익에 해당할 소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봄.

아울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처분에 대한 공개대상자들의 불복 가능성이나 직권 재심사⁷⁾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해당 시점에 등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무관련성 인정에 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개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의 공개는 고액·상습

7)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채납자 명단 공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등 다른 법상의 신상공개 제도⁸⁾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 내용과 법무부 장관에 통보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불이익이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은 사실의 공개는 재산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이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주식 거래내역의 비공개, 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및 비밀엄수 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는 등 현행법 규정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주식과 관련하여 매각·백지신탁 계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의 이행 여부 감시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및 심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생략)

「국세징수법」

제114조(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채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채납자의 인적사항 및 채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여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원행정처는 재산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조치 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심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를 비공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반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⁹⁾

국가정보원은 재산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조치 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급이나 위반행위의 경중 등에 따른 차등적 고려 없이 심사결과를 일괄 공개하는 것은 다른 입법례와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특히 재산심사결과 공개 시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정보원법」 제8조¹⁰⁾와도 충돌되며,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은 사실의 공개는 현행법상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 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는 반면 과도한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9) 특히 재산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재산공개대상자와 비공개대상자를 구별하지 않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과 충돌되고,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은 사실의 공개는 현행법상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 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높지 않은 반면,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10) 「국가정보원법」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342